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회계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대상사업	비고
필수	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◎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'23~'2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
	성별영향평가사업	◎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
권장	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◎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 ◎ 기타사업 :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자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

◆ **제외대상 :**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**성인지 예산서 성격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(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)